

2006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

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『2006년 식품안전관리지침』을 발표하였다.

이 지침의 주요개정내용을 거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리며,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go.kr) 식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2005년 지침내용	2006년 지침내용	개정사유
II. 안전한 식품의 제조·유통기반 조성 1. 식품등의 영업허가 및 관리 가. 기관별 관리 업종 4.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 다.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주기 ○ 식품제조·가공업 - 다류 : 1월마다 1회이상 ○ 식품첨가물 - 1월마다 1회이상 ○ 기구 또는 용기·포장 - 2월마다 1회이상	II. 안전한 식품의 제조·유통기반 조성 1. 식품등의 영업허가 및 관리 가. 기관별 관리 업종 - 제과점영업 신설 4.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관리 다.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주기 ○ 식품제조·가공업 - 다류 : 6월마다 1회이상 ○ 식품첨가물 - 2월마다 1회이상 - 살균소독제를 추가하고 살균 소독력은 5월마다 1회 이상 ○ 기구 또는 용기·포장 - 3월마다 1회이상	○ 영업 형태를 세분화하여 영업 관리 효율성 확보 ○ 규제완화 차원 ○ 규제완화 차원 ○ 살균소독제를 식품첨가물로 관리 ○ 규제완화 차원

자 료 / 2006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

2005년 지침내용	2006년 지침내용	개정사유
5. HACCP 제도 운영	5. HACCP 제도 운영 ○ 교차오염 방지 시설·설비 자금 지원사업 신설 ○ 의무적용 대상식품의 세부 구분 기준 제시(구체화) ○ 의무 적용대상업소 통계관리 및 분기별 보고(보고시기 조정, 반드시 보고토록 유의사항 추가)	○ 2006년 신규사업 반영 ○ 의무 적용대상업소 통계자료를 반드시 보고토록 명기
7. 식품등의 표시 관리	7. 식품등의 표시관리 <개정 내용> ○ 원재료표시규정 개정내용 반영 ○ 영양성분표시 대상품목 확대 내용 제시 ○ 포장재질 표시기준 개정 반영 ○ 카페인표시 규정신설 제시 ○ 밀가루제품의 표시규정 제시	○ 2005. 3. 7 개정고시된 표시기준(고시) 반영
8. 식품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사후조치 요령	8. 식품위해(危害)정보 신속 수집·공유 및 조치 - 식품위해정보를 신속수집·공유 및 조치하기 위한 적용범위의 구체화 - 신속조치절차 및 행정사항을 「식품위해성분/물질검출 대응 실무매뉴얼」을 근간으로 하여 조치도록 함.	○ '식품안전사고 발생방지 및 사회조치요령'을 '식품위해정보 신속 수집·공유 및 조치'로 바꾸어 내용을 구체화 함.

2005년 지침내용	2006년 지침내용	개정사유
9. 식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시·군·구 위생행정시스템 관리	<p>9. 식품분야 통계관리 및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보고체계 전면 개정(신설)</p> <p>가. 시스템 운영개요</p> <p>다. 시스템 운영체계</p> <p>라. 식품위생 관련통계 보고 체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종전] 시·군·구 ↔ 식약청간 연계운영 시스템 ○ [개정] 시·군·구 → 시·도 → 식약청 연계 시스템 변경 ○ 2006년부터 기관별 운영시스템 및 담당업무 등 수록 ○ 식품등 관련업소 현황 및 감시·단속 실적(매분기 종료 15일이내) ○ 식품,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(연도종료 후 3월이내) ⇒ 보고서 작성·취합, 제출, 가공·생산체계 및 유의사항등을 수록
<p>III. 식품 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·감독</p> <p>1. 식품 제조·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</p> <p>가. 식품제조·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</p> <p>3) 행정사항</p> <p>- 시·도지사</p> <p>· 관내 시·군·구청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표1의 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(식품관리팀)에게 보고</p> <p>· <별표1>위생관리등급제 현황 : 총대상업소수, 자율관리업소수, 일반관리업소수, 중점관리업소수</p>	<p>III.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·감독</p> <p>1.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</p> <p>가. 식품제조·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</p> <p>3) 행정사항</p> <p>- 시·도지사</p> <p>· 관내 시·군·구청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표1의 서식에 따라 분기 종료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(식품관리팀)에게 보고</p> <p>· <별표1>위생관리등급제 현황 : 총대상업소수, 자율관리업소수, 일반관리업소수, 중점관리업소수, 평가중인업소수, 평가불능업소수, 비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생관리등급제 운영현황의 보고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 변경 ○ 위생관리등급제 현황 보고 서식 일부 수정

자 료 / 2006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

2005년 지침내용	2006년 지침내용	개정사유
<p>나.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 지도·점검</p> <p>2) 기관별 허가(신고) 관리업종에 대한 지도·단속</p> <p>○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·단속은 식약청(지방청), 시·도, 시·군·구별로 책임 관리업종을 지정하여 책임하에 지도·점검 실시</p>	<p>나.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 지도·점검</p> <p>2) 기관별 허가(신고) 관리업종에 대한 지도·단속</p> <p>○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·단속은 식약청(지방청), 시·도(시·군·구)별로 허가(신고) 관리업종에 대하여 각 기관 자체적인 책임하에 실시</p> <p>○ 기업행정조사 개선 관련 중복 조사대상업소에 대한 공동조사 실시 및 정기보고</p>	<p>○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지도점검을 기관별 책임관리업종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기관별 영업허가(신고) 관리업종을 책임 관리하도록 변경</p> <p>○ 조사대상업소중 중복조사 대상업소에 대한 공동조사의 실시와 중복조사 실적의 매분기별 정기보고 신설</p>
<p>나.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 지도·점검</p> <p>7) 식품등의 회수 및 공표 절차</p> <p>○ 식품등의 회수제도법적근거</p> <p>○ 자진회수와 강제회수제도의 비교</p> <p>○ 행정사항</p>	<p>나.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 지도·점검</p> <p>7) 식품등의 회수 및 공표 절차</p> <p>○ 위해식품등의 회수제도 법적 근거</p> <p>○ 회수절차도</p> <p>○ 회수제도의 비교</p> <p>○ 행정사항</p>	<p>○ 개정된 위해식품등의 회수관련근거에 따른 절차로 수정</p> <p>○ 개정된 절차에 따른 회수절차도 삽입</p> <p>○ 개정된 회수제도의 비교</p> <p>○ 행정사항에 회수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</p> <p>○ 분기보고서식의 일부 수정</p>
<p>2. 식품유통·판매업소 등의 위생관리</p> <p>다. 주요점검내용</p>	<p>2. 식품유통·판매업소 등의 위생관리</p> <p>다. 주요점검내용 : 지방식약청의 점검내용 삭제</p>	<p>○ 지방식약청의 점검내용 종 식품등수입판매업에 대한 점검 이외의 사항 삭제</p>

2005년 지침내용	2006년 지침내용	개정사유
<p>4. 식품등의 수거·검사</p> <p>나. 수거검사 방법</p> <p>1. 특별관리대상식품</p> <p>①과자류, ②아이스크림류, ③유가공품, ④식육제품, ⑤어육가공품 ⑥두부·묵류, ⑦식용유지, ⑧면류 ⑨추출차, ⑩기타음료, ⑪특별용도식품, ⑫고추가루 및 실고추, ⑬향신료가공품, ⑭얼음, ⑮인삼제품류, ⑯김치·절임식품, ⑰전포류, ⑱과·채가공품류, ⑲튀김식품, ⑳별꿀, ㉑도시락류, ㉒재제·가공소금, ㉓찐쌀, ㉔밀가루, 기구·용기·포장, ㉕식품첨가물, 만두, ㉖냉동식품, ㉗콩나물류 전강기능식품</p>	<p>4. 식품등의 수거·검사</p> <p>나. 수거검사 방법</p> <p>1. 특별관리대상식품</p> <p>①과자류(만두포함), ②아이스크림류, ③우유, ④알가공품, ⑤어육가공품 ⑥두부·묵류, ⑦식용유지, ⑧면류 ⑨추출차, ⑩침출차, ⑪음료류, ⑫특수용도식품, ⑬고춧가루 및 실고추, ⑭향신료가공품, ⑮얼음, ⑯인삼제품류, ⑰김치절임식품, ⑱주류, ⑲전포류, ⑳땅콩 및 견과류가공품, ㉑튀김식품, ㉒도시락류, ㉓별꿀, 생식류, ㉔시리얼류, ㉓찐쌀, ㉕기구용기포장, ㉖식품첨가물, ㉗콩나물류 ㉘전강기능식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5년 3/4분기까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높거나 유통점 유율이 높은 식품위주로 선정 - 2006년도 제외식품 : 유가공품, 식육제품, 기타음료, 과·채가공품류, 재제·가공소금, 밀가루, 냉동식품 - 2006년도 추가품목 : 우유, 알가공품, 침출차, 음료류, 주류,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, 생식류, 시리얼류
<p>특별관리대상식품 : 시·도, 지방식약청</p> <p>엽경채소류 신속수거검사 : 시·도, 지방식약청</p>	<p>특별관리대상식품 : 시·도(시·군·구)</p> <p>엽경채소류 신속수거검사 : 시·도(시·군·구)</p> <p>휴대반입품 : 지방식약청</p> <p>기준규격 미설정항목 모니터링 : 지방식약청</p> <p>실적위주의 일괄 수거검사 지향</p> <p>유통중인 농산물(수산물) 수거검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(수산물품질관리법) 소관 관할부서에 통보</p>	<p>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개정에 따라 일상적인 수거검사업무는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 수행하고, 지방식약청은 기준규격미설정 항목 모니터링 등 특별수거</p> <p>형식적인 수거검사를 지양하고, 농산물, 수산물의 경우 생산(재배)단계를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안전성 조사업무에 참고도록 통보</p>

자 료 / 2006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

2005년 지침내용	2006년 지침내용	개정사유
①. 부정·불량식품 특별단속 가. 부정·불량식품기동단속반 운영 2) 명칭·설치·운영 - 지방청 및 시·도는 “○○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○○시·도부정·불량식품기동단속반”으로 칭함 나. 식약청, 시·도 합동단속 3) 추진방법 ○ 단속횟수 : 년4회(3,5,8,10월) ○ 단속대상 및 방법 : 학교급식 관련업소, 기획단속 ○ 단속체계 및 추진기관 - 단속주관 : 식약청, 지방식약청 - 단속반편성 : 권역별 교차단속 ○ 기관별 임무	①. 부정·불량식품 특별단속 가. 부정·불량식품기동단속반 운영 2) 명칭·설치·운영 - 지방청 및 시·도는 “○○지방 또는 ○○시·도부정·불량식품기동단속반”으로 칭함 나. 전국 교차합동단속 3) 추진방법 ○ 단속횟수 : 년4회(분기별1회) ○ 단속대상 및 방법 : 학교급식 관련업소, 기획단속 ○ 단속체계 및 추진기관 - 단속주관 : 식약청 - 단속인원 : 행정응원 요청 - 단속반편성 · 전국교차단속 · 학교급식관련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시 교육청 포함하는 내용 추가	○ 명칭의 일부 수정 ○ 행정사항 일부 수정 ○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일지 서식 삭제 ○ 단속횟수 : 년4회(매 분기별) ○ 지방식약청등에 의한 권역별 교차합동단속방식을 식약청 주관 지자체 행정응원 요청을 통한 실질적 전국단위의 교차단속 방식으로 변경 - 기관별 임무 변경 ○ 합동단속 참여기관에 교육청 포함 ○ 합동단속결과보고 서식 일부 변경
다.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라. 설, 추석 등 명절 성수식품특별단속	다.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라. 설, 추석 등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	○ 특별단속 참여기관에서 지방식약청 삭제 ○ 점검대상업소를 기관별 영업허가(신고) 관할업소로 조정 - 지방식약청 :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,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- 시·도(시·군·구) : 그 외 식품제조·유통·판매업소
마. 초·중등학교주변 및 재래시장 등 취약지 특별관리	마.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바. 재래시장 등 취약지 특별관리	○ 국무총리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재래시장 취약지역 분류하여 관리

2005년 지침내용	2006년 지침내용	개정사유
	I. 시민식품감사인제도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설된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운영 지침 추가
IV.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. 식중독 관리 및 보고체계 ○ 여행지에서 발생한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	IV.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. 식중독 관리 및 보고체계 ○ 여행지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경우 여행지 관할 보건소장이 최종결과 보고 ○ 집단급식소 등의 위생시설 설치비용 식품진흥기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행지에서 발생한 식중독 조사결과보고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 ○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우려 업종에 대한 시설설치비용 지원하여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는 목적
2.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 관리 ○ 집중관리업소 지도·점검시 “미생물 간이검사킷트”를 활용한 현장 지도 계몽 ○ 도시락류제조·가공업소 점검 기관 : 지방식약청	2.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 관리 ○ 집중관리업소 지도·점검시 현장지도 계몽과 음용수, 행주, 도마 등 수거·검사 강화 ○ 도시락류제조·가공업소 점검 기관 : 시·도 및 시·군·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방법보다 직접적인 관리방법이 효과적 ○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개정에 따라 일상적인 지도·점검 업무는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 수행
V. 수입식품등 검사 및 관리 1. 수입식품등의 검사 나. 검사종류 및 방법 3) 정밀검사 ○ 정밀검사, 무작위 표본검사 또는 수거·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식품등은 회 정밀검사 후 적합하여 재수입할 경우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	○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수거·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식품등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수입신고 회수를 기준으로 회 정밀검사 후 적합하여 재수입할 경우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름 ※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
○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1년이 경과한 농임수산물과 3년이 경과한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또는 용기·포장	○ <삭제>	

자 료 / 2006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

2005년 지침내용	2006년 지침내용	개정사유
<p>〈신설〉</p> <p>2.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다.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수입 업소 사후관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식품등과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 <p>〈삭제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등 수입 시마다 관할자치단체에 사후관리 협조시행
<p>〈신설〉</p>	<p>3.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검사</p> <p>가. 검사종류 및 대상</p> <p> 1) 서류검사</p> <p> 2) 관능검사</p> <p> 3) 정밀검사</p> <p> 4) 무작위표본검사</p> <p>나. 검사지시 식품 등에 대한 검사 철저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<p>〈신설〉</p>	<p>4.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사후관리</p> <p>가.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수거· 검사 강화</p> <p>나.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사후관 리 철저</p> <p>다. 행정처분업소 관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
2005년 지침내용	2006년 지침내용	개정사유
<p>Ⅶ.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입신고 및 표시관리</p> <p>1.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수입 신고 업무 지침</p> <p>나. 주요 확인 사항</p> <p>2.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감시 업무 지침</p> <p>지방청 및 시·도(시·군·구)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 실시</p>	<p>Ⅷ. 유전자재 조합식품 표시 및 안전성 관리</p> <p>1.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수입 및 표시관리</p> <p>나. 주요 확인 사항 <u>국내검사성적서의 경우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 기관 발급분에 한함</u></p> <p>2.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유통 및 표시관리</p> <p><u>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·검사를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 수행</u></p> <p><u>시·도별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 전수 지정 및 시·군·구별 전수는 시·도에서 조정, 배분 및 총괄토록함</u></p> <p>3. 안전성 평가 미승인 유전자재 조합식품등의 관리</p> <p>〈참고자료〉 <u>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개요</u></p> <p>〈참고자료〉 <u>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관리 개요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성 평가 미승인 품목 관리 내용 추가 ○ 검사성적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·운영 ○ 지자체로 일반 수거·검사 업무 이관 ○ 식용 전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심사 의무화에 따른 업무 신설 ○ 신규자등을 위한 업무 개요 설명 및 수입 시 확인 서류 등에 대한 요건 정리 ○ 신규자등을 위한 업무 개요 설명

자 료 / 2006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

2005년 지침내용	2006년 지침내용	개정사유
<p>III. 건강기능식품 관리</p> <p>1.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 및 관리</p> <p>아.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사용관리</p> <p>- [신설]</p>	<p>VII. 건강기능식품 관리</p> <p>1.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 및 관리</p> <p>아.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및 관리</p> <p>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-55호(2005.10.10)</p> <p>〈개정내용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인정기준, 인정절차 등 신설 - 의약품제조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신설 <p>4.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·육성</p> <p>가.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 자목(4)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을 정한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고시 제정
<p>[신설]</p>	<p>4.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·육성(신설)</p> <p>나.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의 표준화 및 전산화(GMS 보급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·의약품 종합시스템 도입(2005.9)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허가·신고관련 민원신청 안내 필요
<p>3. 우수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</p> <p>라.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의 표준화 및 전산화(GMS 보급)</p>	<p>나.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의 표준화 및 전산화(GMS 보급)</p> <p>〈개정내용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GMS 정의 - 05년 GMS보급현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ERP를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품질향상, 안전성확보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진 GMS 시스템의 안내 필요
<p>4. 기능성 표시 및 광고관리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관리</p> <p>- 신설</p>	<p>o. 기능성 표시 및 광고관리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관리</p> <p>〈개정내용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' 주요개정내용 소개 - 별표1] <p>2.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예시</p> <p>: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품목 개 추가(녹차추출물제품, 대두단백질함유제품, 식물스테롤함유제품,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, 홍국제품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-65호(2005.11.11)] ○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-26호(2005.5.26)]
<p>[별표1]</p> <p>2.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예시</p>		